

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357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 : 2021. 11. .
제 출 자 : 하 남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상위법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2021.1.12. 개정) 및 같은 법 시행령(2021. 7. 6. 개정) 의 일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지구단위 계획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은 연장 기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정하도록 신설(안 제16조제2항)

3. 개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신구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서 : 덧붙임

6. 예산수반 사항 : 해당없음

7. 입법예고 결과

가. 예고기간 : 2021. 9. 8. ~ 2021. 9. 28. [20일간]

나. 의견내용 : 의견없음

8. 부서협의 결과

가. 규제개혁 관련협의 : 해당없음

나. 성별영향 분석평가 : 의견없음

9. 참고사항 : 해당없음

10. 관련부서 : 경기도 도시정책과

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하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6조의 제목 “(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)” 을 “(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등)” 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.

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.

부서명		도시계획과
입안자	부서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과장 이 태 민
	팀장 직위·성명	도시계획팀장 정 황 근
	담당자 성명·전화번호	정 혜 진 (790-5491)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6조 <u>(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)</u> (생 략)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16조 <u>(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등) ①</u> (현 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</p> <p><u>②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으로 한다.</u></p>

관계법령 발췌서

1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

[시행 2021. 7. 13.] [법률 제17898호, 2021. 1. 12., 일부개정]

제54조(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축 등)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(일정 기간 내 철거가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)을 건축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려면 그 지구단위계획에 맞게 하여야 한다. 다만,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<개정 2021. 1. 12.>

[전문개정 2013. 7. 16.]

2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

[시행 2021. 7. 13.] [대통령령 제31877호, 2021. 7. 6., 일부개정]

제50조의2(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) 법 제54조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설건축물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.

1. 존치기간(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)이 3년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특별자치도·시 또는 군의 도시·군계획조례로 정한 존치기간 이내인 가설건축물
2.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
3.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

부 칙 <대통령령 제31877호, 2021. 7. 6.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에 관한 적용특례) 이 영 시행 전에 「건축법」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가설건축물은 제50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존치기간의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허가 또는 신고에 따라 부여받은 존치기간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로 본다.